

#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

#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유정희 의원 외 12명
- 나. 의안번호: 제2559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8. 10
- 라. 회부일자: 2021. 8. 18

#### 2. 제 안 사 유

-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#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함
- 나. 전체 문맥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함 (안 제6조제1항)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어 등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안 제1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‘자(者)’를 ‘사람’으로 바꾸고자 하나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 안전 검토, 심의·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(個人)뿐만이 아닌 용역업체나 연구단체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개인과 단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‘자’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- 또한, 안 제6조제1항 중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근거를 ‘제5조’에서 ‘제5조제4항’으로 수정하여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성 확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.

⑤ (생략)